

#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고성미 의원 발의]

의안번호	2345
------	------

발의일자 : 2023. 5. 31.  
발 의 자 : 고성미 의원  
찬 성 자 : 이인식 의원  
도병두 의원

## 1. 제안이유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별도의 안건으로 분리하여 의회가 각각의 안건에 대해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 강화와 예산 사용에 대한 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결산서 등의 제출 (안 제1조 및 제2조)
-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을 별도 안건으로 제출 (안 제3조)
- 예비비 지출에 대한 분기별 보고 (안 제4조)
- 지방회계법 등에 따른 구청장의 의무 (안 제5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43조
- 2) 「지방회계법」 제14조
- 3) 「지방자치법」 제150조
- 4)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 1) 입법예고: 2023. 6. 1. ~ 2023. 6. 7.

##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주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 등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과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예비비 지출 제출)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의무) 구청장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한 의회 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지방회계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회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감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업무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회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회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 「지방재정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1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